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7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한정애·정성호·송옥주

권칠승 • 이용우 • 임오경

박 정・추미애・정춘생

박지원 · 김남희 · 허성무

문진석 · 강유정 · 장경태

백혜련 • 김동아 • 김영배

조인철 · 이병진 · 위성락

오기형 • 이재강 • 김민석

이학영 • 이인영 • 김재원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

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 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제3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3항 중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를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과 밖에서 경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②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u>경위는 회의장</u>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	건물 안과 밖에서 경호한다.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